

평창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

1. 심 사 경 과

- 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01. 3.29. 평창군수(자치행정과장)
- 나. 회 부 일 자 : 2001. 4. 17
- 다. 상 정 일 자 : 제84회 평창군의회(임시회)제1차 조례특위 (2001.4.17)
상정·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

(제안설명자 : 자치행정과장 장하진)

가. 제 안 이 유

- 본 조례안과 규칙의 상호중복된 사항이 있어 중복된 규칙을 폐지하고 그 내용을 조례안에 통합하고자 하는 것임.

나. 주 요 골 자

- 평창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등에 관한조례중 **임용자격 기준을 규칙에서 정하도록 한 것을 조례로 정하도록 개정(안제4조 제3항)**
- “**직종의 신설등으로 별표(제4조제3항)의 직무구분에 열거되지 아니한 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자격기준을 기타 직무분야의 임용자격 기준을 준용**”토록 신설(안제4조 제4항)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

(전문위원 : 박태영)

- 본 조례는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조건·임용절차 및 근무상한

연령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로 1985. 5.16일 평창군 조례 제979호로 제정된 것임.

- 그동안 지방별정직 공무원 임용자격 기준을 군수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한 규정을 폐지하고 조례에 포함관리 하려는 것으로 별표의 직무분야나 임용자격 기준의 변화는 없는 것임.
- 별정직 공무원의 직무분야와 임용자격 기준을 조례에서 직접규정 함은 평창군 별정직 공무원의 권익신장의 실익이 있을 것으로 분석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없 음

5. 토론요지 : 없 음

6. 심사결과 : 원안의결

7. 소수의견의 요지 : 없 음

8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 음

붙임:평창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1부